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2019년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실시하는 이 설문조사는 전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실태와 구제조치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최근 3년간(2016.1.1.~2018.12.3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현황과 귀 대학 관련 규정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응답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 조사의 특성상 설문이 진행되어 응답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곤란합니다. 일단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며, 자동으로 중간 저장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에 위한 집합적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개별 대학의 관련 정보 역시 비밀유지가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조사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주관

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책임자: 신상숙 (02-880-8951)

(주)한국리서치  
손주희 연구원 (02-3014-1055)







## II. 상담활동

※ 이하의 질문은 귀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구의 상담활동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9.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담당 기관에서 실시한 각 항목별 상담건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해당 유형 실제 상담건수가 없는 경우, 0을 입력해 주십시오.

※ 상담 집계방식이 달라 항목별 상담건수 응답이 어려운 경우 기타항목에 총 상담건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2018년 총 상담건수 (단위: 건)
1) 온라인상담(e-mail등)	( )건
2) 개별 면접상담	( )건
3) 전화상담	( )건
4) 집단면접상담	( )건
5) 기타	( )건
합 계	

9-1. 귀 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 종류를 아래의 보기에서 순서대로 **2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연애, 결혼 등 관계 상담
- ② 성희롱·성폭력 상담
- ③ 성차별 관련 상담
- ④ 가족갈등 및 가족관계 상담
- ⑤ 스토킹 피해 상담
- ⑥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관련 상담
- ⑦ 과거의 성폭력피해경험 치유 상담
- ⑧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상담
- ⑨ 성매매 관련 상담
- ⑩ 기타( )

㉙ 학생 대상 상담 없음

9-2. 귀 기관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 종류를 아래의 보기에서 순서대로 **2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연애, 결혼 등 관계 상담
- ② 성희롱·성폭력 상담
- ③ 성차별 관련 상담
- ④ 가족갈등 및 가족관계 상담

- ⑤ 스토킹 피해 상담
- ⑥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관련 상담
- ⑦ 과거의 성폭력피해경험 치유 상담
- ⑧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상담
- ⑨ 성매매 관련 상담
- ⑩ 기타( )
- ㉙ 교직원 대상 상담 없음



### III. 사건조사 및 구제조치 현황

※ 이하의 질문은 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접수 및 조사·심의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사건 접수 후 귀 기관에서는 이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 ① 고충상담원이 직접 사건을 조사 ->문11
- ② 조사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가 구성되어 사건을 조사 ->문12
- ③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 ->문11
- ④ 기타( ) ->문11
- ⑤ 최근 3년간 사건이 없어 응답이 어려움 ->문12

11. 위원회의 공식적 조사·심의를 거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 ② 사안의 경중에 따라
- ③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타협가능성에 따라
- ④ 상담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의 내부적 여력에 따라
- ⑤ 학내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
- ⑥ 기타( )

12. 귀 대학에는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본부 차원의 심의(대책)위원회 (상설)	①	②
상담소 차원의 조사위원회 (상설)	①	②
상담소 차원의 사건별 조사위원회 (비상설)	①	②

12-1. 귀 대학에는 조사·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별도로 사건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명칭은 무엇입니까? 예) 조정위원회

- ① 있다 (기구 명칭: )
- ② 없다



※ 이하의 질문은 지난 3년간 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구제 실태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17. 최근 3년간(2016.1.1.~2018.12.31.) 귀 기관에서 **상담이 이뤄진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모두 몇 건 인가요? 그 중에서 단순상담을 제외하고 귀 기관에서 **접수·처리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모두 몇 건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성희롱·성폭력 상담 사건	성희롱·성폭력 접수·처리 사건
2016년	( )건	( )건
2017년	( )건	( )건
2018년	( )건	( )건
합 계		

18. 최근 3년간(2016.1.1.~2018.12.31.) 귀 기관에서 접수·처리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양상, 처리결과를 사건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피해양상은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신고인 (피해자) 지위	신고인 (피해자) 성별	피신고인 (행위자) 지위	피신고인 (행위자) 성별	피해양상	처리 결과
보기	① 학부생 ② 대학원생 ③ 전임교원 ④ 비전임교원 ⑤ 직원(정규직) ⑥ 직원(비정규직) ⑦ 기타	① 남 ② 여	① 학부생 ② 대학원생 ③ 전임교원 ④ 비전임교원 ⑤ 직원(정규직) ⑥ 직원(비정규직) ⑦ 기타	① 남 ② 여	① 언어적 성희롱 ② 시각적 성희롱 ③ 신체적 성희롱 ④ 강제추행 ⑤ 준강간 ⑥ 강간미수 ⑦ 강간 ⑧ 스토킹 ⑨ 온라인 성희롱 ⑩ 기타	① 조사심의 후 중재 ② 조사심의 후 징계(요청) ③ 조사중단, 기각 ④ 상담소차원의 조정 중재처리 ⑤ 기타 처리
사건 1						
사건 2						
사건 3						
사건 4						
사건 5						
사건 6						
사건 7						
사건 8						
사건 9						
사건 10						





(문17에서 3년간 접수처리 사건이 있는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23.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조치들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 중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특별조치는 원치 않음(단순상담)
- ②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간 개인적 해결(재발방지 약속, 사과, 휴학 등에 대한 조정 등)
- ③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를 원함
- ④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외부기관(경찰, 인권위 등)의 조사나 법적조치를 원함
- ⑤ 피해자가 피해보상이나 공간분리 등의 조치를 원함
- ⑥ 피해자가 상담 후에도 가해자 대응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함
- ⑦ 기타( )

24. 귀 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다음의 각 항목들 중 지원하고 있는 것을 선택 해주시고, 경비보조 여부에 대해서도 표시해 주십시오.

	지원		경비 보조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1)수사 및 법적지원 (수사의뢰/수사동행/법률상담/소송지원)	①	②	①	②
2)심리 및 정서적 지원 (개인상담/전문심리치료 기관연계)	①	②	①	②
3)의료지원 (치료동행/의료기관연계/기타)	①	②	①	②

25. 귀 대학에서 지난 3년간(2016.1.1.-2018.12.31) 아래의 항목 중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피신고인의 묵비권으로 인한 조사의 곤란
- ② 피신고인의 학내 조사 시 변호인 동석 요구
- ③ 피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사건의 재심의
- ④ 피신고인의 신고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인한 조사중단

(문17에서 3년간 접수처리 사건이 있는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26. 귀 대학에서 행위자(피신고인)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내용이나 수위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2016.1.1.-2018.12.31.)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대체로 피해자가 받은 영향(고통)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여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대체로 가해자가 너무 빨리 복귀(복학)해서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대체로 징계가 가해자에게 초래하는 불이익	①	②	③	④	⑤	⑥

익이 없어 징계로서의 의미가 없다						
4) 대체로 휴학, 군입대, 휴직, 안식년 등의 방법으로 징계를 회피하여 결국 처벌의 의미가 희석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귀 대학 측은 지난 3년간(2016. 1. 1. ~ 2018. 12. 31.) **신고인**이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분쟁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형사소송 있음 (    ) 건
- ② 민사소송 있음 (    ) 건
- ③ 형사·민사소송 없음 ->문28

27-1.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 무죄(일부무죄 포함) 판결이 나온 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일부 기각 포함)이 나온 사건은 몇 건입니까?

- ① 형사소송 혐의 없음 (    ) 건
- ② 민사소송 기각 (    ) 건
- ③ 결과 모름 (    ) 건

28. 귀 대학에서는 지난 3년간(2016. 1. 1. ~ 2018. 12. 31.) **피신고인**이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 건
- ② 없음 ->문29

28-1. **피신고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징계와 관련된 결정이 취소(일부취소 포함)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징계가 무효(일부무효 포함)가 된 사건은 몇 건입니까?

(    ) 건

29.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온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사유 별로 사건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 ① 신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    ) 건
- ② 법리판단으로 인해 (    ) 건
- ③ 기타 (사유:    ) (    ) 건
- ④ 해당 없음 ->문30

30.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스톨미투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귀 대학의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미투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늘었다.	①	②
2) 미투운동 이후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②
3) 미투운동 이후 대학이 징계 규정 등을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①	②
4) 우리 대학에서도 미투운동 사례가 있었다.	①	②
5)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교내 미투운동에 적극 참여한 편이다.	①	②
6) 우리 대학 상담창구에 미투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다.	①	②
7) 대학 차원에서 교내 미투고발 사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①	②
8) 대학 차원에서 교내 미투고발 사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①	②

31. 학생-학생 간 사건에서 2차 피해는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2차 피해 유형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학생-학생 사건의 2차 피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가끔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1. 행위자가 자기변명을 하며 주변에 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탓하기	①	②	③	④	⑤
2.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만남을 종용하기	①	②	③	④	⑤
3. 행위자가 자신의 사과를 수용하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하기	①	②	③	④	⑤
4. 행위자나 측근이 피해자의 신고의사 또는 신고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해, 모욕, 고소, 협박 등	①	②	③	④	⑤
5. 주변인이 사건에 관하여 소문내거나 피해자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주변인이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행위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기	①	②	③	④	⑤
7. 주변인이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말을 전달하거나 압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8. 조사처리의 지연이나 피해자의 처지가 고려되지 않는 절차의 한계 또는 불합리성으로 인한 피해	①	②	③	④	⑤
9. 사건조사, 학내 협의, 징계 등의 과정에서 신상비밀 보장의 실패로 인한 피해	①	②	③	④	⑤
10. 가해자의 징계 불복이나 징계 후 조기 복귀로 인한 피해	①	②	③	④	⑤

32. 교원-학생 간 사건에서 2차 피해는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2차 피해 유형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교원-학생 사건의 2차 피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가끔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1. 행위자가 자기변명을 하며 주변에 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탓하기	①	②	③	④	⑤
2.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만남을 종용하기	①	②	③	④	⑤
3. 행위자가 자신의 사과를 수용하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하기	①	②	③	④	⑤
4. 행위자나 측근이 피해자의 신고의사 또는 신고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해, 모욕, 고소, 협박 등	①	②	③	④	⑤
5. 주변인이 사건에 관하여 소문내거나 피해자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주변인이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행위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기	①	②	③	④	⑤
7. 주변인이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말을 전달하거나 압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8. 조사처리의 지연이나 피해자의 처지가 고려되지 않는 절차의 한계 또는 불합리성으로 인한 피해	①	②	③	④	⑤
9. 사건조사, 학내 협의, 징계 등의 과정에서 신상비밀 보장의 실패로 인한 피해	①	②	③	④	⑤
10. 가해자의 징계 불복이나 징계 후 조기 복귀로 인한 피해	①	②	③	④	⑤



#### IV. 상담기구의 시설 및 인력 현황

※ 이하의 질문은 귀 대학 성평등상담기구의 시설, 예산, 인력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6에서 ⑦없다 선택 시 문 33 skip)

33. 귀 기관의 자체 시설 현황은 어떠합니까?

※ 개수를 적어주시고,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 0을 입력해 주십시오.

시설	현황
1)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 )개
2) 행정실 등 일반 사무실	( )개
3) 조사·심의 등을 위한 회의실	( )개
4) 강의실 또는 교육장	( )개

(문6에서 ⑦없다 선택 시 문 34 skip)

34. 귀 기관의 전체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그 중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 1억 미만	1억 이상	모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문6에서 ⑦없다 선택 시 문 35 skip)

35. 귀 기관의 소장 혹은 센터장의 학내 지위 및 소속을 적어 주십시오.

1) 직위 및 직급	
2) 소속	

(문6에서 ⑦없다 선택 시 문 36 skip)

36. 귀 기관의 책임자를 제외한 직원의 인적구성 및 인원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 해당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인원수에 '0'명을 적어주십시오.

	인원수
1) 전문상담원	( )명
2) 행정직원	( )명
3) 조교	( )명
4) 인턴 등 임시인력	( )명
5) 기타 인력	( )명

(문6에서 ⑦없다 선택 시 문 37 skip)

37. 귀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다음의 보기 중에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재정 부족
- ② 정규직원 부족
- ③ 전문인력 부족
- ④ 기관 홍보 부족
- ⑤ 프로그램의 부족
- ⑥ 시설공간의 부족
- ⑦ 대학 내 기관의 영향력 부족
- ⑧ 대학 외부의 관련 기관과 연계 부족

※ 이하의 질문은 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전담자(상담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38. 전체 근무자 중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전담자의 성별 인원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1) 여성	( )명
2) 남성	( )명
3) 전체	

39. 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전담자의 고용형태별 인원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1)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 )명
2) 일반 계약직	( )명
3) 기타	( )명
4) 전체	

39-1. 기타라고 응답해 주신 고용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 )

40. 귀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전담자가 실제로 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접수
- ②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
-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④ 심리 상담 등 학생상담
- ⑤ 인권 관련 상담
- ⑥ 일반 행정 업무
- ⑦ 보건 관련 업무
- ⑧ 기타 학생지원 업무( )

41. 귀 기관에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전담자의 학력별 인원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1) 학사	( )명
2) 석사과정	( )명
3) 석사	( )명
4) 박사과정	( )명
5) 박사	( )명
6) 전체	

42. 귀 기관에서 근무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전담자는 전문자격증 및 수료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전원 전문자격증 및 수료증 있음
- ② 일부 전문자격증 및 수료증 있음
- ③ 전문자격증 및 수료증 보유자 없음

43. 귀 기관은 고충상담원이 외부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이나 직무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4. 귀 기관에서는 직원의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비용을 지원합니까?

- ① 지원한다 ② 지원하지 않는다

45. 귀 기관에서 근무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전담자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2천만원 미만
- ③ 2천만원~3천만원 미만 ④ 3천만원~4천만원 미만 ⑤ 4천만원 이상

46.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담당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낮은 급여수준
- ② 과중한 업무
- ③ 타 교원/직원들의 비협조
- ④ 직원 보수교육
- ⑤ 직원의 결정권한 부족
- ⑥ 중요한 정보 및 전문지식의 부족



### V.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 이하의 질문은 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구와 규정에 대한 문항들로, 해당 규정을 직접 참조하면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실시되는 것과 별개로 명문화 되어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47. 귀 대학에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이 존재합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57

48. 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의 공식명칭을 적어 주십시오.

\*「00대학교 성희롱 예방지침」등의 경우 대학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1) 공식명칭(규정의 제목)	
-----------------	--

49. 위 규정의 제정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

50. 관련 규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 )년

51. 귀 대학의 관련 규정의 '용어 정의' 조항에는 다음 중 어떤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성폭력' 용어 정의
- ② '성희롱' 용어 정의
- ③ 기타 용어 정의 ( )
- ④ 용어 정의 조항 없음

52. 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은 다음 중 어떠한 '법령'에 의거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 ① 양성평등기본법
- ② 구) 여성발전기본법
-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⑥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 지침
- ⑦ 일반법령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⑧ 기타( )

53. 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상, '적용요건'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① 피·가해자 모두 학내 구성원이어야 한다.
- ②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하나만 학내 구성원일 경우에도 다룬다.
- ③ 피·가해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④ 기타( )

54. 귀 대학의 관련 규정상,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심의 기구**의 구성에 아래의 집단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다음의 각 항목별로 명시 여부를 응답 해주십시오.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학생	①	②
2) 직원	①	②
3) 외부전문가	①	②
4) 기타	①	②

54-1. 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는 **조사·심의 기구** 구성에 참여하는 집단의 성별안배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 ① 조사·심의기구에 명시되어 있다
- ② 조사기구에만 명시되어 있다
- ③ 심의기구에만 명시되어 있다
- ④ 명시되어 있지 않다

55. 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 보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음의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십시오.

	있다	없다
1) 신원 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	①	②
2) 조사시 대리인 동석	①	②
3) 피해자보호 긴급 임시조치	①	②
4) 신고·진술로 인한 불이익 금지	①	②
5) 2차 가해 금지 조항	①	②
6) 2차 피해 정의 조항	①	②
7) 심리·의료·법적 비용 예산지원 가능	①	②
8) 인권보호 조치 요청 가능	①	②
9) 즉시 조치 의무화 또는 처리기한 명시	①	②
10) 기타( )	①	②

56. 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피신고인 조치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음의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시오.

	있다	없다
1) 피신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①	②
2) 피신고인의 퇴거, 격리, 이용제한 등 공간분리 조치	①	②
3) 2차 피해 유발시 가중 징계 요청	①	②
4) 사건종결 후 사건공개 가능	①	②
5) 재발방지 교육 이수 명령	①	②
6) 실명 공개사과 권고 가능	①	②
7) 금전적 피해보상 명령 가능	①	②
8) 외부인 가해 행위에 대한 소속 단체 통보	①	②
9) 기타( )	①	②



## VI. 기타 개방형 설문

5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귀 대학에서 수행되는 교육의 특징에 관한 설문입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귀 대학이 적용하는 특별한 교육 방식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5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 또는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59.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VII. 응답자 특성

문1. 선생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문2.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문3.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학사
- ② 석사과정
- ③ 석사
- ④ 박사과정
- ⑤ 박사

문4. 선생님의 학내 직급이나 직위는 무엇입니까?

( )

문4. 현재 직위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 )년
- ② ( )개월

문5. 선생님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 ② 다른 상담업무와 성희롱·성폭력 교육, 상담 및 해결 검임
- ③ 성희롱·성폭력 업무와 관련 없음
- ④ 기타( )